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2선거구, 노식래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내용은

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

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

“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·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 를 삭제하는 것입니다.

○ 지난 4월 25일

“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”와 관련한  
대법원 판결에서

서울시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

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이

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

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

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

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